

최저임금의 실효성 제고

정진호*

◆ 최근 임금 동향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명목임금은 2008년 4/4분기 이후 2009년 3/4분기까지 낮아졌으며, 명목임금의 구매력을 고려한 실질임금도 2008년 3/4분기 이후 2009년 4/4분기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2009년 연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88년의 -2.5% 이후 다시 -0.7%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위기 직전에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4,000원으로 2008년의 3,770원에 비하여 6.1% 인상되었다.

한편 최근 명목임금은 2009년 4/4분기, 실질임금은 2010년 1/4분기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초과 및 특별급여의 증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둔화 등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중에 결정된 2010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4,100원으로 최저임금법이 실시된 지난 1988년 이후 가장 낮게 2.8% 인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도 2009~10년에 동결되었다.

<표 1>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

	명목임금 (천 원/월, %)	정액급여 (천 원/월, %)	소정근로시간 (시간/월, %)	시간당 정액급여 (원/시간, %)	최저임금 시급 (원/시간, %)
2007	2,716 (5.6)	2,026 (6.3)	159.9 (-1.4)	12,671 (9.2)	3,480 (12.3)
2008	2,810 (3.1)	2,154 (6.3)	159.6 (-0.2)	13,496 (6.5)	3,770 (8.3)
2009	2,795 (-0.7)	2,166 (0.6)	163.0 (2.1)	13,291 (-1.5)	4,000 (6.1)
2010					4,110 (2.8)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호 및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jh@kli.re.kr).

◆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회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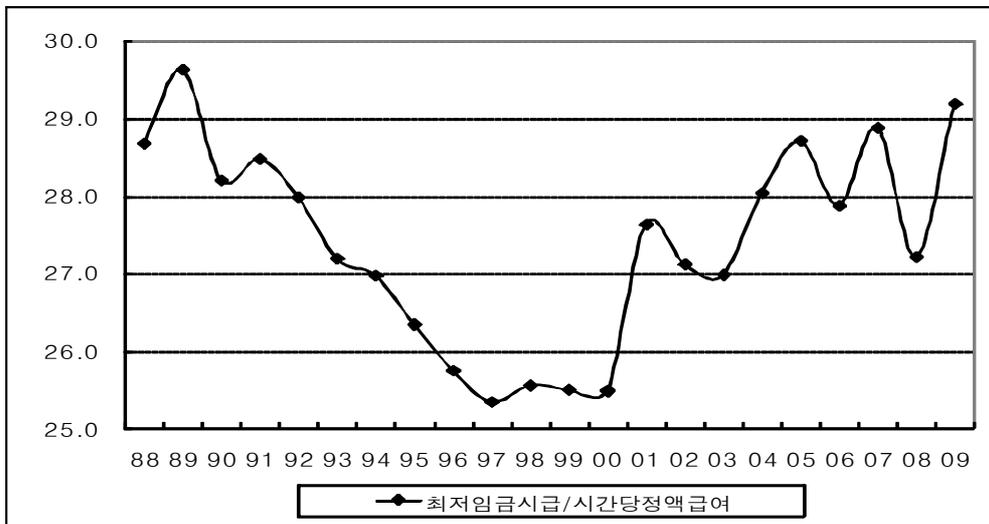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자는 실시 첫 연도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5에 불과하였지만, 그 이후 적용대상 산업 및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2000년 11월 24일 이후에는 전체 임금근로자로 확대되어 있다. 또한 정신·신체장애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수습 및 감사·단속직 근로자에게는 감액된 최저임금(subminimum)이 적용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예: 고용, 소득분배 등)는 최저임금의 일반임금에 대비한 상대적 수준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는 최저임금 시급을 시간당 정액급여와 비교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지난 1989~2009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 및 시간당 정액급여 상승률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은 10.8%, 정액급여는 10.7% 상승하여 최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도입 초기에 비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1988년에 28.7%였지만, 2009년에는 29.2%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1991년 이후 1997년까지 낮아졌으며, 그 이후 2000년까지 정체되어 있다가 다시 최근까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25.3%까지 낮아지기도 하였다.

[그림 1]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추이



주: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기준, 시간당정액급여=월정액급여/월소정근로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호 및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자료.

◆ 최저임금 미만 저임금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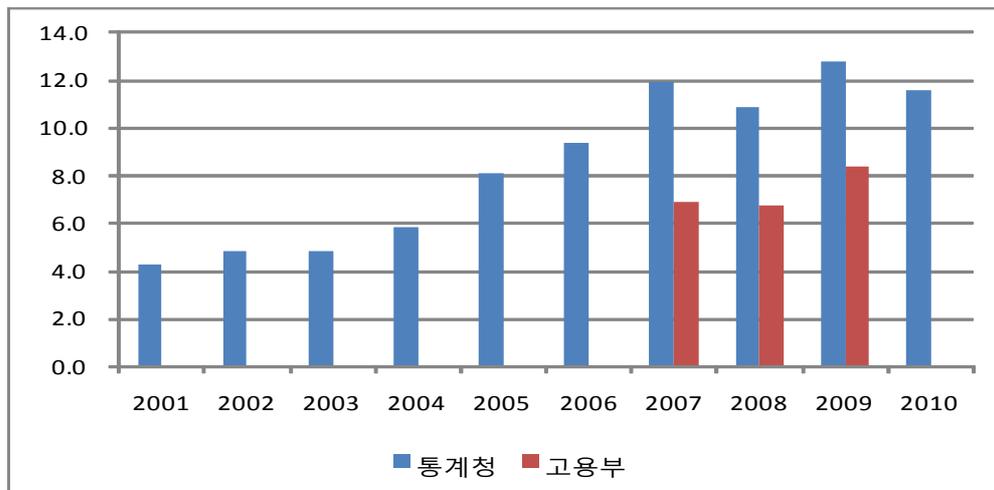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전체 임금근로자로 확대된 2000년 11월 24일 이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등락하면서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도 2007년까지 높아지다가 최근에는 등락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최저임금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만 영역에서 상당한 비율의 근로자가 항상 존재하여 최저임금정책이 일반의 기대만큼 저임금해소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임금분포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 돌출되지만, 미만 영역의 임금분포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있다.

물론 최저임금 미만율/영향률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산입항목과 가장 근접한 통상임금 기준 시간당임금률이 직접 조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조건을 충족시키는 임금관련 조사통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9년에 8.4%(사업체조사) ~ 12.8%(가구조사)로 추정되며, 유급주휴 등 지불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이보다 높게 추정된다. 향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발생원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추적사례연구가 요구된다.

[그림 2] 최저임금 미만을 추이



주: 최저임금 미만율은 시간당임금총액(통계청 자료 이용시) 또는 시간당통상임금(고용노동부 자료 이용시)이 최저임금(시급) 미만인 근로자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 최저임금 실효성 제고

1. 임금 통계조사 개선

중소비정규외국인근로자의 임금결정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서 임금 기초통계량(영향률, 상대적 수준 등)의 포괄성/정확성을 둘러싼 노사간의 논란이 지속되는 등 신뢰할 만한 국가통계의 부재로 최저임금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받고 있다.

향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서는 임금근로시간 정보가 보다 정확한 사업체조사를 중심으로 전체 임금근로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임금에 대한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가 실시되어야 한다.

물론 현행 가구조사에서는 최저임금 통계와 관련하여 조사항목을 추가하더라도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사통계는 임금 및 근로시간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사업체조사에서도 일반 근로자의 유급주휴 등 지불근로시간, 그리고 실제(actual)보다 지불(paid)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보다 필요한 감사단속적 근로자, 택시기사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임금근로시간 정보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2. 최저임금법 강제 및 준수

비록 분석자료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난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등락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최근 최저임금법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음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의 강제 및 준수 정도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법규정(regulation)이 준수되는 공정한 사회에서는 무시할 정도로 낮은 최저임금 미만률은 통계적 이탈(outlier), 정보제약상 고려할 수 없는 감액적용/적용제외 근로자의 존재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저임금이 해소되지 않고 항상 일정 규모로 존재하여, 최저임금 정책효과가 저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저임금의 준수제고를 위한 정책홍보, 근로감독 강화 등의 노력이 보다 요구된다. [11]